

인증제품 현황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환경성적표지 인증(건)	신규	463	669	728	889	1,038
	누적	4,000	4,669	5,397	6,286	7,324
저탄소제품 인증(건)	신규	167	257	466	399	978
	누적	807	1,064	1,530	1,929	2,9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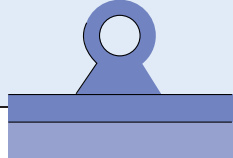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구분		수수료* (VAT별도)	
		대 ·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본심사	최초제품	750만원	대·중견기업의 약 50% (제경비 면제)
	파생제품 (동시신청)	150만원	
	파생제품 (별도신청)	250~300만원	
1. 갱신, 변경 2. 환경성적 → 저탄소	최초제품	400~450만원	
	파생제품 (동시신청)	150만원	
	파생제품 (별도신청)	250~300만원	
동일제품·제조원 인정		150만원	
동일제품 인정		5만원	

* 인증신청수수료는 제품 및 사업장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매출 1,000억 원 이하 중소기업



인증혜택

-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에 저탄소제품 포함
- 조달청 종합낙찰제 선정평가 시 환경평가 심사항목으로 탄소 배출량정보 활용
- 조달청 제한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 구매 대상에 저탄소제품 포함
- 환경성적표지 인증 자재 사용 시 녹색건축 인증 평가 최대 2~4점 점수 부여
-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로 의무 사용
- 녹색기업 지정제도 3점 가점 부여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대상기업 선정 시 환경성적표지 인증기업 1점 가점 부여
- 그린카드 제도와 연계하여 인증제품 소비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에코머니) 제공
- 환경정보공개제도 내 '제3자 인증 및 Type II 제품 현황' 관련 정보 등록 시 '제3자 환경관련 인증제품'에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포함
- 대중매체(TV, 신문 등), 전시회, 뉴스레터 및 설명회 등을 통한 인증제품 홍보

환경성적표지 해외 상호 인정

개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해외EPD 인증기관과 상호인정협정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을 체결하여 환경성적표지 인증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정의



상호인정은 양국의 인증기관이 합의한 바에 따라, 국내 환경성적표지 인증 결과와 해외 EPD 기관의 인(검)증 결과를 상호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호인정 수수료



구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 인증 기관
(국내→해외) 신청	제품당 5만원 (기본수수료, 부가세 별도)	해외 인증 기관별 수수료 기준을 따름
(해외→국내) 신청	제품당 약 70만원 (기본수수료+서류심사비용, 부가세 별도)	

인증기간



구분	인증기간
(국내→해외) 신청	상호인정 승인일로부터 원 인증의 만료일까지
(해외→국내) 신청	환경성적표지 표준 인증기간(3년) (단, 상호인정 협정 만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

현행 상호인정기관 ('25.12. 기준)



EPD-Global
(노르웨이)



참고사항

- 원 인증기관에서 EPD 인증을 취득한 후, 협정기관에 상호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호인정 대상 제품군은 기관 간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과정평가실
TEL. 02-2284-1580 FAX. 02-2284-1593

<https://ecosq.or.kr>

<https://www.keiti.re.kr>

*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용지로 제작되었습니다.



<https://ecosq.or.kr>



2026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안내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성적표지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환경성적표지 제도는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원료 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 ✓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 ✓ 저탄소제품 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 ✓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 ✓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의자격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환경성적표지 제도 연혁

- 2001. 02 환경성적표지제도 시행
 - 2002. 01 제품의 전과정목록분석(LCI) DB 운영기관 지정
 - 2007. 01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
 - 2009. 02 탄소성적표지(탄소배출량) 인증제도 시행
 - 2011. 11 저탄소제품 인증 도입
 - 2016. 07 환경성적·탄소성적표지 제도→환경성적표지 제도로 통합
 - 2017. 01 환경성적표지 신규 통합로고 변경
 - 2020. 08 저탄소제품 기준 고시 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정 제2020-180호)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해 저탄소제품이 녹색제품* 범위에 포함
 - 2024. 11 한국환경산업기술원-EPD Global 상호인정협정(MRA)체결
- * 녹색제품 :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

운영체계

환경성적표지 제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총괄운영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세부운영(작성지침 제·개정 및 인증·사후관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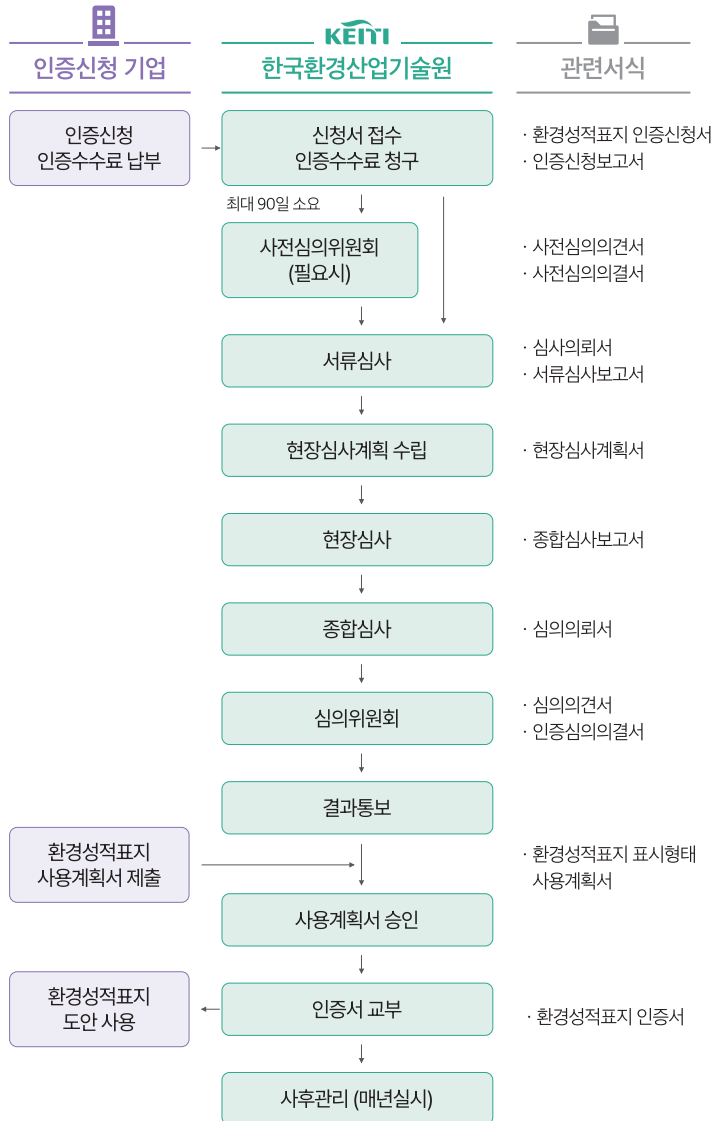


운영절차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개발]



[환경성적표지 인증 및 사후관리]



저탄소제품

저탄소제품은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저탄소제품 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저탄소제품 기준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탄소배출량이 동종제품 평균보다 적은 제품이어야 합니다.
(동종제품 평균이 없는 경우, 기존 자사 인증제품 대비 탄소발자국 3.3% 이상 감축 시 인정)

최대허용탄소배출량 기준

저탄소제품 신청일의 이전 분기부터 과거 6년 이내 동종제품의 환경성적표지 탄소발자국 평균값

최소탄소감축률 기준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초로 설정

환경성 정보 및 도안

